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339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OO
임직원	前대표이사 2인, 前담당임원, 담당임원
외부감사인	▲▲회계법인

2. 조치내용

○ ㈜OO
- 과징금 20,474.1백만원

○ 前대표이사 ☆☆☆
- 과징금 559백만원

○ 前대표이사 ◎◎◎
- 과징금 455.5백만원

○ 前담당임원 ◆◆◆
- 과징금 146.2백만원

○ 담당임원 ◇◇◇
- 과징금 350.8백만원

○ ▲▲회계법인
- 과징금 1,068백만원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< ㈜OO >

○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(제련소 주변지역)

- 회사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'21~'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, '23~'24년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하여 과소계상함

○ **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(주변 임야)**

- 회사는 제련소 주변 임야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'23~'24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

○ **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(제련소 1·2공장)**

- 회사는 제련소 1·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 정화에 대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함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

○ **지하수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**

- 회사는 '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제련소 오염 지하수에 대한 법적 정화의무가 존재하여, 향후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비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정화업체와의 실제 계약금액만을 충당부채로 과소계상함

○ **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(과대)계상**

- 회사는 '22~'24년 제련소 유형자산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'22년 최선의 추정치가 아닌 과거의 조업정지 손익 추정치를 사용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, '23년 자산손상 평가 시 자의적으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

< ▲▲회계법인 >

○ **토양정화충당부채(제련소 주변지역)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**

- 감사인은 회사가 토양정화충당부채(제련소 주변지역)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○ **지하수정화충당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**

- 감사인은 회사가 지하수정화충당부채를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

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○ **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**

- 감사인은 회사의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평가 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소(과대)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○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등